

제2026-1호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직원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 모집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상·정보, 유해 약물 및 불건전 업소 광고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점검과 신고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매체 환경 조성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을 지키는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청소년 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맡은 바 임무를 끝까지 수행해 주실 분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2026. 5. 22.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총 66명)

구분	직급	모집인원	근무형태	근무시간	채용기간
기간제	기간제(매체) 조사원	60명	재택	3시간/일 (주5일, 15시간)	2026. 7. 11.(토) ~ 12. 10.(목) / 5개월
	기간제(매체) 조사원 ※장애인 제한채용	6명			

□ 응시자격

구분	내용
공통	1. 국내에 거주하는 '08. 1. 1. 이전 출생자(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유해정보를 취급하므로 청소년은 지원불가 2. 점검기기(스마트폰, PC) 보유·사용 가능자, 유무선 인터넷 접속 근무 환경 필수
장애인 제한채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며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
우대사항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역인재,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
비고	- 복무규정에 따라 영리업무 및 겸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업무 특성상 유해매체물 및 불법·유해정보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으므로, 업무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후 지원바랍니다.

□ NCS분류체계

채용직무	NCS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매체점검	20.정보통신	03.방송서비스	06소셜미디어방송서비스	06소셜미디어 콘텐츠분석

※ 해당 직무와 관련된 자격과 전공 등 세부사항은 NCS기반 채용직무명세서(붙임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무조건

- 근무장소 : 재택(유·무선 인터넷접속 근무 환경 필수)
 - ※ 최초 근무장소 설정 후 근무지 변경 불가
- 담당업무

내용
-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점검 등 (모바일 앱, SNS, 인터넷방송 등) - 2026년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사업계획에 따른 업무 등

- 근무형태

구분	내용	
근무형태	일 3시간, 주5일 근무(월~금)	
근무시간 (2부제)		
	구분	근무시간
	1부	10:00~13:00
	2부	13:00~16:00
※ 근무시간은 입사 지원시 1·2부 중 선택		

- 보수

직급	월 급여(세전)	비고
기간제(매체) 조사원	837,130원	* 4대보험 적용

□ 서류접수

- 공고기간: 2026. 5. 22.(금) ~ 2026. 6. 8.(월) 09:00
- 접수기간: 2026. 5. 22.(금) ~ 2026. 6. 8.(월) 09:00
- 접수방법: **입사지원 사이트 (<https://kyci.fairyhr.com>)**를 통한 인터넷 접수
 - ※ 증빙서류는 면접심사 전 제출(별도 안내)
 - 입사지원서는 접수기간 시작일로부터 입력 가능, 마감일 정각에 자동 종료됨
 - 입사지원서 제출 후 최종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바람
 - 반드시 입사지원 사이트 접속 후 지원(방문, 우편, 이메일 제출 불가)
- 자격 관련 유의사항
 - 필기시험 등 일부전형 합격 사실만으로 해당 항목을 기재할 경우 허위기재에 해당함
 - 증빙방법 : 자격증 사본 제출(발급기관 취득확인서 제출 가능)
 - 유효기간 : 발급기관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 준수(유효기간 미기입 등의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전형절차

구분	일정(예정)	합격자 처리기준 등 세부내용
서류심사	2026.6.15.(월)	○ 서류심사 합격자 처리기준 - 총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채용예정인원대비 2배수 이내)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자 결정
서류심사 결과발표	2026.6.18.(목)	○ 입사지원 홈페이지 확인(문자 안내)
면접심사	2026.6.22.(월) ※비대면(화상)	○ 면접심사 합격자 처리기준 - 총점 평균 8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순서에 따라 합격자 결정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인재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4.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5. 해당 면접심사 이전 모든 전형의 점수 총합이 높은 자 ※ 예비소집 및 면접시간은 합격자 개별 통보
적격여부 심사	2026.6.29.(월) ~7.3.(금)	○ 경력·자격·가점 증빙서류 진위 확인 및 결격사유 조회
면접심사 결과발표	2026.7.6.(월)	○ 입사지원 홈페이지 확인(문자 안내) ○ 예비합격자 처리기준 - 면접심사 결과 8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 예비합격자는 해당 채용과정 합격자의 결원 발생시 우선 채용 ※ 합격발표일로부터 예비합격 기간 5개월
채용(예정)일	2026.7.11.(토)	※ 채용(예정)일이 휴일인 관계로 출근(예정)일은 2026.7.13.(월)

※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전형별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비고
서류전형	자격증	정량평가	20점	「붙임2」의 「표1」 참조
	경력·경험기술서	정성평가	30점	
	직무수행 계획		30점	
	자기소개서		20점	
면접전형	직무 적합성	정성평가	35점	
	직무수행능력		35점	
	면접태도		30점	

※ 붙임2 전형별 세부 평가기준 참조

□ 우대사항

항목(가산점 비율)	내 용	증명서류
국가유공자 (10%, 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산점 대상자 · 10%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보훈청 발급) 가산점비율 10% 대상자 · 5%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보훈청 발급) 가산점비율 5%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이 3인 이하일 경우 해당 채용부문 전형 시 가점을 운영하지 않음. 단, 응시자 수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함	국가유공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경·중증) 장애인증명서
지역인재(3%) * 참고 참조	○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학교 출신자 (사이버, 디지털대 등 평생교육시설 제외)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학사 이상은 학사 출신학교 기준, 고졸 이하 는 최종학력 기준	졸업증명서
저소득층(3%)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 가족(3%)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확인서
북한이탈주민(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다문화가족(3%)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가족	다문화가족 확인서
한국사능력(3%)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및 2급 보유자	자격증
청년인턴 경력자(3%)	○ 본원 청년인턴 경력자 ※ 서류전형에만 적용	경력증명서

※ 가산점 비율(%)은 각 전형별 총점(100점)에 대한 비율이며, 가산점 각 항목을 합산하되 각 전형별 총점의 15%까지 인정함(최고 15점)

※ 반드시 해당기관에 증명서류 발급 가능 여부 확인 후 응시. 증명서류 미제출시 허위 기재에 해당 함 (3개월 이내 발급)

□ 기타사항

- 적격자가 없으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참여자가 하반기 채용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채용부문별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며 1개 부문만 지원 가능합니다.(중복지원 시 탈락처리)
- 응시지원서 최종 제출 후 수정·삭제가 불가하며, 관련 사유로 입사지원을 이중 제출하는 경우 중복지원으로 간주하며 모두 불합격 처리됩니다.
- 여유있게 지원해야 하며, 접수기간은 연장하지 않습니다.
※ 마감에 임박하여 지원시, 다수 동시접속으로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음
- 응시지원서 기재사항이 증빙서류와 일치하지 않으면 허위기재로 합격이 취소됩니다.
※ 증빙서류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 후 응시지원서 작성 요망
- 응시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누락, 지원자와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편견요소(성별, 나이, 학교명 등)와 관련된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시 별도안내를 통하여 제출하며, 응시자는 제출하는 증빙서류에서 민감개인정보와 편견요소와 관련된 내용을 블라인드 처리하여 등록합니다.
-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응시자가 요청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서를 제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드립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까지 서류를 보관하며,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파기하되, 파기하되, 채용된 직원의 인사자료·전형단계별 평정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한 탈락자 연락처·평정표는 영구 보관됩니다. *붙임5 참조
- 응시자격기준에 미달할 경우 서류전형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불합격 처리)
- 채용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바랍니다. *붙임4 참조
※ 개인정보(응시자평가위원 등) 및 지적재산권(출제문제) 보호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사항은 답변하지 않음
- 자격 등의 충족기준일은 접수마감일로 합니다.
- 검직 관련 참고사항

★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은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나, 다음 각 호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검직을 허가함

① 검직 허가 신청 대상 업무가 본인 또는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

② '①'의 수입이 사회 통념상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경우

※단, ①, ②사항 모두를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조건에 해당될 경우 검직이 제한 될 수 있음

㉠근무시간 및 검직 업무 종사 시간의 합이 주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등 검직 허가 대상인 업무로 인해 청소년유해매체 점검 직무 능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검직대상 업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상당하여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 업무 및 청소년상담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 제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
- 본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국가기관 또는 청소년상담원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직급의 정년연령(만60세)을 초과하는 사람
- 기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해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
- 부정합격자(부정 행위를 통해 채용된 자)

□ 문의

-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박세미 과장
- (전화) 02-6958-8434, (전자우편) parkssem0203@kyci.or.kr

NCS 기반 채용직무 명세서

직종	기간제(매체) 조사원		직무	청소년유해매체 점검
NCS 분류체계	대분류	20.정보통신		
	중분류	03.방송서비스		
	소분류	06.소셜미디어 방송서비스		
	세분류	06.소셜미디어콘텐츠 분석		
NCS 직무 정의	○ 소셜미디어 방송서비스는 기업 또는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에 콘텐츠를 서비스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콘텐츠를 기획, 제작, 유통 관리하는 일로 청소년유해매체 점검 직무의 대상이 된다. ○ 청소년유해매체 점검 직무는 소셜미디어, 인터넷방송 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소셜미디어 방송서비스) 내 불법·유해정보를 감시·신고하는 일이다. ○ 불법·유해정보는 사회법익을 침해하고 법질서를 위반하는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물건의 유통 및 청소년유해업소 고용·출입을 조장하는 청소년유해정보로 구분한다.			
NCS 능력 단위	○ (06. 소셜미디어콘텐츠분석) 소셜미디어 콘텐츠 분석이란 소셜미디어 콘텐츠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콘텐츠 분석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수집·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분석결과물을 만드는 능력이다. - 소셜미디어 구조 이해하기 - 소셜미디어 플랫폼별 불법·유해정보 채증 및 신고하기 - 신고 통계자료 분석하기 - (직무 관련)온라인 불법·유해정보 동향 파악하기			
NCS 관련 자격	○ (직무 관련) 청소년상담사(1,2,3급), 청소년지도사(1,2,3급), 사회복지사(1,2,3급) ○ 빅데이터분석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1,2급), 데이터분석(준)전문가, 디지털정보활용능력(고급)			
NCS 관련 전공	○ 전자공학, 전산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공학, 언론·방송학, 정보통신			
기타사항	○ 능력단위별 필요 지식·기술·태도, 직업기초능력 등 NCS직무 관련 세부사항은 NCS 홈페이지(www.nc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전형별 평가기준

○ 서류심사 평가 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계	정량평가(20점)	정성평가(80점)		
	자격증	경력 및 경험 기술서	직무수행 계획	자기 소개서
100점	20점	30점	30점	20점

2. 항목별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정량평가 (20점)	자격증	20점	•자격증별 점수를 합산하되 20점을 초과한 경우 20점만 인정 •동일 자격에 복수 급수를 취득한 경우 가장 높은 자격증 1개만 인정 •직무관련 자격증 세부점수는 <표1>의 평점표에 따라 부여						
	경력 및 경험 기술서	30점	•평가주안점: 불법·유해정보 점검 및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영상물게임물) 관련 직무 수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 평점 참고치 참고하여 평가 ※평점 참고치 <table><tr><td>매우 높음(우수)</td><td>보통있음(보통)</td><td>약간있음(미흡)</td></tr><tr><td>30점 ~ 21점</td><td>20점 ~ 11점</td><td>10점 ~ 0점</td></tr></table>	매우 높음(우수)	보통있음(보통)	약간있음(미흡)	30점 ~ 21점	20점 ~ 11점	10점 ~ 0점
매우 높음(우수)	보통있음(보통)	약간있음(미흡)							
30점 ~ 21점	20점 ~ 11점	10점 ~ 0점							
정성평가 (80점)	직무수행계 획	30점	•평가주안점: 모니터링 목표의 명확성, 실행 가능성, 전문성, 팀원과 협력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 평점 참고치 참고하여 평가 ※평점 참고치 <table><tr><td>매우 높음(우수)</td><td>보통있음(보통)</td><td>약간있음(미흡)</td></tr><tr><td>30점 ~ 21점</td><td>20점 ~ 11점</td><td>10점 ~ 0점</td></tr></table>	매우 높음(우수)	보통있음(보통)	약간있음(미흡)	30점 ~ 21점	20점 ~ 11점	10점 ~ 0점
	매우 높음(우수)	보통있음(보통)	약간있음(미흡)						
	30점 ~ 21점	20점 ~ 11점	10점 ~ 0점						
자기 소개서	20점	•평가주안점: 개인의 특성이 기관의 특성 및 문화, 환경 여건과 부합되는 정도, 기관 및 직무 특성에 대한 수용적인 자세, 이를 통해 기관과 청소년매체환경보호에 기여하 고자 하는 정도, 작성내용의 논리성 및 문장력, 충실성 등을 평가 ※평점 참고치(평가지표: 평가주안점 내용 참고) <table><tr><td>지 표에 모두 부합</td><td>지표에 보통정도로 부합</td><td>지표와 약간 부합</td></tr><tr><td>20점 ~ 14점</td><td>13점 ~ 7점</td><td>6점 ~ 0점</td></tr></table>	지 표에 모두 부합	지표에 보통정도로 부합	지표와 약간 부합	20점 ~ 14점	13점 ~ 7점	6점 ~ 0점	
지 표에 모두 부합	지표에 보통정도로 부합	지표와 약간 부합							
20점 ~ 14점	13점 ~ 7점	6점 ~ 0점							
합계		100점							

[표1. 직무관련 자격증 세부점수 기준 평점표]

구분	시행처	구분	점수		
			1급	2급	3급
국가자격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상담사	5점	4점	3점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지도사	4점	3점	2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3점	2점	1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빅데이터분석 기사	5점		
	한국산업인력공단	사무자동화산업기사	3점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처리	기사 : 5점, 산업기사 : 4점, 기능사 : 3점		
	대한상공회의소	컴퓨터활용능력	1급 : 4점, 2급 : 3점		
공인민간자격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ADsP(데이터분석)	전문가 : 5점, 준전문가 : 4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디지털정보활용능력	고급 : 2점		
	한국생산성본부	정보기술자격(ITQ) (한글엑셀/한셀, 한글엑세스, 인터넷)	A등급 : 2점		
	한국생산성본부	인터넷윤리자격(IEQ)	지도사 : 1점		

○ 면접심사 평가 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계	정성평가(100점)		
	직무적합성	직무수행능력	면접태도
100점	35점	35점	30점

2. 항목별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정성평가 (100점)	직무 적합성	35점	•평가주안점: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및 의사소통 능력,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이해와 열정, 그리고 계획 실행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 평점 참고치 참고하여 평가 <table><tr><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r><tr><td>35점 ~ 29점</td><td>28점 ~ 20점</td><td>10점 ~ 0점</td></tr></table>	우수	보통	미흡	35점 ~ 29점	28점 ~ 20점	10점 ~ 0점
	우수	보통	미흡						
	35점 ~ 29점	28점 ~ 20점	10점 ~ 0점						
직무수행 능력	35점	•평가주안점: 사전과제를 통해 지원자가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 과제의 핵심 목표를 파악하는 정확성,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 제시, 발표 과정에서의 논리성과 설득력, 그리고 과제 수행 및 발표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책임감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 평점 참고치 참고하여 평가 <table><tr><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r><tr><td>35점 ~ 29점</td><td>28점 ~ 20점</td><td>10점 ~ 0점</td></tr></table>	우수	보통	미흡	35점 ~ 29점	28점 ~ 20점	10점 ~ 0점	
우수	보통	미흡							
35점 ~ 29점	28점 ~ 20점	10점 ~ 0점							
면접태도	30점	•평가주안점: 지원자의 적극성, 자신감, 논리적이고 명확한 의사 전달 능력,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 그리고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응력과 상황 대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table><tr><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r><tr><td>30점 ~ 21점</td><td>20점 ~ 11점</td><td>10점 ~ 0점</td></tr></table>	우수	보통	미흡	30점 ~ 21점	20점 ~ 11점	10점 ~ 0점	
우수	보통	미흡							
30점 ~ 21점	20점 ~ 11점	10점 ~ 0점							
합계		100점							

가 산 점 부 여 기 준

항목	내용	적용	
		서류심사	면접심사
국가유공자 (10%, 5%)	• 10%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보훈청 발급) 가산점비율 10% 대상자 • 5%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보훈청 발급) 가산점비율 5%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이 3인 이하일 경우 해당 채용부문 전형 시 가점을 운영하지 않음. 단, 응시자 수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함	○	○
장애인 (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
지역인재 (3%)	-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출신 학교자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학사이상 학위자는 학사출신학교 기준, 고졸이하 졸업자는 최종학력 기준	○	○
저소득층 (3%)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한부모 가족 (3%)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
북한이탈주민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다문화가족 (3%)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가족	○	○
한국사능력 (3%)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및 2급 보유자	○	○
청년인턴 경력자 (3%)	- 본원 청년인턴 경력자	○	-

※ 가산점 각 항목을 합산하되 각 전형별 총점의 15%까지 인정함

[붙임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사업장 귀하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23.3)」 기준에 따름>

□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 학교(지방대학)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2개 이상 대학 졸업의 경우 지원자가 제출한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판단

□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

가.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 (2)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 (예시) 고려대 세종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인지 여부는 해당학교에 직접 확인

예시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지방대학에 해당함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가 아님

-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 (4)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나.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예시)

-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경기·인천 지역대학
-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 (3)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시설
- (4)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다.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 (1)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 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3)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 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다.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 대학 졸업 여부 검증

- 응시자가 제출한 졸업증명서를 통하여 지방대학교 졸업자 검증
- 응시자가 제출한 졸업증명서로 본교와 분교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교 졸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학교장 확인서** 등)를 제출받아 검증